

제 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응시번호				사진 (3.5cm×4.5cm)
응시자	성명			
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		
	휴대전화	이메일(E-Mail)		

시험사항	응시자격			
	시험면제	[] 해당 없음 [] 제1차 시험 면제 : 제 회 제1차 시험 합격(응시번호 번)		
	제1차 시험 선택과목 (3개 선택)	[] 소방학개론 [] 구급·응급처치론 [] 재난관리론 [] 교육학개론		
	응시지역			

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응시자 (서명 또는 인)

소방청장 귀하

..... 절 취 선

제 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표

사진 (3.5cm×4.5cm)	응시번호		성명	
			생년월일	
	시험일시 및 장소	제1차 시험 : 제2차 시험 :		
	제1차 시험 선택과목			
	합격(예정)자 발표일자	제1차 시험 : 제2차 시험 :		

년 월 일

소방청장 직인

응시수수료 납부확인란

수수료
3만원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증명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의2 제6호,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응시자

(서명 또는 인)

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

1. 응시번호 :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.
2. 주민등록번호 :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3. 주소 :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,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.
4. 휴대전화 및 이메일 : 필요 시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.
5.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.5cm×4.5cm 규격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하며, 인터넷 접수 시 JPG파일을 첨부합니다.
6. 응시자격 :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의2 ‘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’ 각 호 중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호의 번호를 하나만 기재합니다.
※ 예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번호 "2"를 기재합니다.
7. 시험면제 : 전 회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시험의 회수와 당시 응시번호를 기재합니다.
※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.
8. 제1차 시험 선택과목 : 제1차 시험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[] 안에 "v" 표시를 합니다.
9. 응시지역 : 시험 공고 시 안내하는 응시지역 중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.
10. 모든 내용은 정자(正字)로 작성하여야 하며,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.

응시자 주의사항

1.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를 말합니다)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3.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가능(다만, 시험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)하며, 응시표는 시험 당일 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.
4. 시험답안카드(OMR)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5. 이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6. 「소방기본법」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.
※ 부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는 이동전화, 소형무전기, 무선 기능 전자시계 등의 소지를 금지합니다.
7.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: 응시자 중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.